

「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2. 18(목) 평창군수(안전건설과장)
- 회부일자 : 2016. 04. 14(목)
- 상정일자 : 2016. 04. 27(수) 제21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안전건설과장 장근용)

- 제명 띄어쓰기 정비 및 「도로법」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공사기간을 반영한 내용으로,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”를 “평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31조 및 제64조”를 “제35조 및 제91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“원인자”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나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.

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20일이내”를 “30일 이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